

01 부적격 당첨 주의, 중복청약!

반정 아이파크캐슬 4단지 및 5단지 동시 분양으로 인해 청약신청 접수일은 동일하나, 당첨자 발표일을 달리하는 일정입니다.

아래 주의사항 및 사례를 참조하시어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예1) 청약자 본인이 5단지 특별공급 청약 후, 다음날 1순위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→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, 1순위 당첨은 무효처리.

예2) 청약자 ① 본인은 5단지 1순위 청약, 세대 분리된 ② 배우자(세대주)는 4단지 1순위 청약하여 둘다 당첨된 경우.

→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5단지 당첨(본인)만 인정, 4단지 당첨(배우자)은 부적격 처리.

■ 반정아이파크캐슬(청약과열지역)에 세대주가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청약하는 경우 또는 세대 분리된 부부가 세대주 자격으로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

구분		본인 특별공급 1건 + 본인 1순위 1건	본인 1순위 1건 + 본인 1순위 1건 [중복 청약]	본인 특별공급 1건 + 배우자 1순위 1건	본인 1순위 1건 + 배우자 1순위 1건
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	동일 단지 ①	특별공급 당첨만 인정 (1순위 무효)	있을 수 없는 사례 [우선 청약주택만 접수 유효]	본인 (특별공급) 당첨만 인정 배우자(1순위) 부적격 (재당첨 제한)	둘다 부적격 (재당첨 제한)
	다른 단지	둘 다 무효	둘 다 무효	둘 다 부적격 (재당첨 제한)	둘 다 부적격 (재당첨 제한)
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(② 다른 단지)		선 당첨만 인정 (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) * 후 당첨 부적격(재당첨 제한) [동일 통장사용시 후당첨 무효처리]	선 당첨만 인정 (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) * 후 당첨 무효	선 당첨만 인정 (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) * 후 당첨 부적격 (재당첨 제한)	선 당첨만 인정 (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) * 후 당첨 부적격 (재당첨 제한)

① = 반정아이파크캐슬 4단지 또는 5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부부가 모두 청약을 넣을 경우를 포함

② = 반정아이파크캐슬 4단지와 5단지 각각 1건씩 청약 하는 경우

02 부적격 당첨 주의, 거주지 구분!

※ 「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」(2020.06.24 공포)에 의거, 당 사업지는 수원시 '망포 4지구' 4,5BL → '화성시'로 행정구역 변경

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1.06) 현재

- ▶ '화성시' 거주민들은 "1순위 당해지역 청약"일 청약
- ▶ 기타 경기도(수원시 포함),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 거주민들은 "1순위 기타지역 청약"일 청약 가능

거주지	1순위 청약일	거주지역 확인 기준
화성시	2020.11.17. 화 (1순위 당해지역)	반정아이파크캐슬 4,5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1.06) 현재 '주민등록표등본' 상 거주지 확인
수원시	2020.11.18. 수 (1순위 기타지역)	
기타 경기도, 서울, 인천	2020.11.18. 수 (1순위 기타지역)	

* 예외) 단, 행정구역 변경으로 '화성시'에서 '수원시'로 바뀐 지역(수원시 영통구 신동, 권선구 곡반정동(일부))에 계속 거주한 자는 해당 아파트 공급지역 거주자로 인정되어 1순위 당해청약 가능

※ 적격 및 부적격 판정 예시

거주지	1순위 청약일	적격 여부	부적격 당첨자 제한사항
화성시 거주자	1순위 '기타지역' 청약 시	부적격	◇ 당첨 동호수 계약 체결 불가 ◇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→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
수원시 거주자	1순위 '당해지역' 청약 시	부적격	
수원시 영통구 신동 등 거주자 (행정구역 변경지역(지번) 거주자)	1순위 '당해지역' 청약 시	적격	당첨 동호수 계약 체결 가능

※ 위 사항은 타입 별 경쟁이 있을 경우이며, 미달 시 모두 '적격' 처리 됨.